

학교현장실습 시 유의 사항



예비교원

1. 근무 사항

- 가. 모든 교육실습생은 실습학교/협력교사의 안내에 따른다.
- 나. 근무 중에는 항상 교원(교육공무원)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.
- 다. 교육실습 기간 동안 배우고 익혀야 할 역량을 명확히 한다.
- 라. 교원과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,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.
- 마. 결근, 지각, 조퇴, 외출 등 근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학교에 알린다.
- 바. 교내 및 학교인근에서도 금연 수칙을 준수한다.
- 사. 점심시간은 학교의 일정에 맞추고 학생 생활지도 활동 등에 참여한다.

2. 학급경영 및 학생 생활 지도

- 가.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맞게 지도한다.
- 나. 학급 경영은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방침에 따라 지도한다.
- 다. 모든 담당 학급일은 협력교사/학급지도교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라. 성인지 감수성,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.
- 마.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.
- 바. 여러 학생을 상대로 할 때는 경어나 예사 높임말을 사용한다.
- 사. 학생지도는 교내에서 하고, SNS 등 교육 목적 이외의 사적인 접촉은 금한다.

3. 코로나-19 방역 지침에 따른 유의 사항

- 가.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와 학교의 생활방역 체계를 철저히 준수한다.
- 나. 발열, 호흡기 증상, 메스꺼움, 미각·후각 마비,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유선으로 실습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출근여부를 결정한다.
- 다. 협력 교사와 적극 협력하여 학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에 내실을 기한다.
- 라. 예비교원으로서 학교 방역 관리와 학생지도에도 적극 참여한다.

FAQ

1. 교육실습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은 몇 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?

- ☞ 교육실습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, 수업시간 외의 시간(점심시간, 아침활동시간, 방과 후 시간)을 교육실습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교육활동(아침자율학습 지도, 급식지도, 교재연구 등)에 참여하여야 함.

2. 학교현장실습 기간에 공휴일 또는 개교기념일이 포함될 수 있나요?

- ☞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(개교기념일 포함) 등이 포함될 수 있음. 단, 공휴일·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함.(고시 제6조 4항).

3. 코로나 때문에 현장실습 학교를 찾기 어려운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?

- ☞ 코로나로 인하여 실습학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2주까지는 양성대학의 허가 하에 간접실습으로 가능함.